

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20 - 125호

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정정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7호(2007.06.07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(2008.05.22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65호(2016.06.16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97호(2017.03.16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71호(2017.07.20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10호(2018.11.15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20-119호(2020.07.02.)로 관리처분변경인가 고시한 내용 중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기준)

구분		규모별 (㎡)	건립 세대수 (호)	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				비고	
				보류 시설	조합원	일반 분양	임대		
임대	39	39.970	219	—	—	—	139		
	49	49.920	177	—	—	—	111		
	53	53.950	75	—	—	—	46		
	소계		296	—	—	—	296		
분양	공동주택	39	39.970	219	1	10	69	—	
		49	49.920	177	1	14	51	—	
		53	53.950	75	2	11	16	—	
		59A	59.960	357	2	350	5	—	
		59B	59.970	40	1	37	2	—	
		76	76.650	96	1	86	9	—	
		84A	84.950	342	2	322	18	—	
		84B	84.940	60	1	55	4	—	
		102	102.740	66	1	61	4	—	
		120	120.040	32	1	26	5	—	
		소계		1,168	13	972	183	—	
총계		1,464	13	972	183	296			
상가	42호	5,696.31	42	—	42	—			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)

구 분		규모별 (㎡)	건 립 세 대 수 (호)	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				비고	
				보류 시설	조합원	일반 분양	임대		
임 대	39	39.970	219	—	—	—	139		
	49	49.920	177	—	—	—	111		
	53	53.950	75	—	—	—	46		
	소계		296	—	—	—	296		
분양	공 동 주 택	39	39.970	219	1	10	69	—	
		49	49.920	177	1	14	51	—	
		53	53.950	75	2	11	16	—	
		59A	59.960	357	2	352	3	—	
		59B	59.970	40	1	35	4	—	
		76	76.650	96	1	86	9	—	
		84A	84.950	342	2	322	18	—	
		84B	84.940	60	1	55	4	—	
		102	102.740	66	1	61	4	—	
		120	120.040	32	1	26	5	—	
	소 계		1,168	13	972	183	—		
총 계			1,464	13	972	183	296		
상 가	42호	5,696.31	42	—	42		—		

※ 다른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0-119호(2020.07.02.)와 동일. 끝.